

부산지역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일보사,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기관명 가나다 순)는 부산 낙후지역 사회배려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낙후지역 사회배려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사다리교육과 진로·인성교육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각 기관의 협력사항)

각 기관은 당해 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사다리교육과 진로·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협력사항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상호간 조정하기로 한다.

가) 각 대학기관(교수·교직원·재학생)은 다음과 같이 협력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1. 학력신장을 위한 희망사다리교육 지원사업
2. 진로상담 등 교육
3. 이 밖에 본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지원사업

나) 부산일보사는 부산지역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해 언론사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제 3 조 (각 기관의 권역별 협력)

1. 경성대학교: 남구·수영구·기장군지역
2. 동아대학교: 서구·동구·사하구 지역
3. 동의대학교: 부산진구·북구 지역

4. 부산교육대학교: 연제구·동래구지역
5. 신라대학교: 사상구·강서구지역
6. 영산대학교: 금정구·해운대구지역
7. 한국해양대학교: 영도구·중구지역

제 4 조 (재원조성 등)

가) 각 기관의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예산 지원 등을 받아 시행한다.

나) 실행예산 재원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방법 등에 관해서는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업무상 비밀유지 등)

본 사업에 참가하는 기관은 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각 기관간의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유효기간) 본 업무협약서는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년 후 별도 이의가 없을 시 상호협의를 따라 1년간 자동연장 한다.

제 7 조 (해지)

가)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다른 기관은 해당 기관에게 서면통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1개월)을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기관에게 본 협약서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 (신의성실의 원칙)

각 기관의 당사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의 합의된 내용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 9 조 (수정 및 변경) 본 협약서는 각 기관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017년 4월 13일

경성대학교 총장
송수건

(代) 송수건

동아대학교 총장
한석정

한석정

동의대학교 총장
공순진

공순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하윤수

하윤수

부산일보사 사장
안병길

안병길

신라대학교 총장
박태학

박태학

영산대학교 총장
부구욱

부구욱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한일

박한일